

# 최근 미국의 상속증여세제 개편동향 및 그 시사점\*

김 상 겸\*\*

## Ⅰ 요약

본 논문은 미국의 상속증여세제 현황과 최근의 개편동향을 살펴보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본 연구이다. 미국의 상속증여관련 세제는 자산의 이전을 주요한 개념으로 하여 이전세(transfer tax)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주에는 상속세(inheritance tax), 증여세(gift tax), 세대생략세(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 유산세(estate tax)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상속증여관련 세제는 자산이전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사후에 부과되는 유산세와 생전에 부과되는 증여세를 상호보완적인 세제로 간주, 세대간 자산이전이 생전증여나 사후증여의 경우에 큰 차별이 없도록 한 것이다. 현재의 미국의 상속증여관련 세제의 최근 개편은 '경제성장과 조세경감조정법(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이의 핵심은 점진적인 세부담 완화를 통한 경제성장의 도모라 할 수 있다. 최근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의 개편안 제시이래, 유산세는 2010년 일시적으로 폐지되었다가 부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지만, 개편안 이전의 핵심 개편방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핵심주제어 : 상속세, 증여세, 유산세, 세제개편

## Ⅰ. 개 관

미국의 상속증여관련 세제는 자산의 이전을 주요한 개념으로 하여 이전세(transfer tax)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적절한 반대급부 없이 한 개인으로부터 다른 개인에게 자

\* 본 연구는 저자의 다른 공저, '상속증여세제 선진화를 위한 제언 :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발간예정)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부 조교수, iamskkim@dankook.ac.kr

산이 이전되는 현상을 기본 개념으로 보고 이에 과세하는 것을 상속증여관련 세제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전세 범주에는 상속세(inheritance tax), 증여세(gift tax), 세대생략세(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 유산세(estate tax) 등이 있다. 이때 유산세와 세대생략세, 증여세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과세되고 있으며, 상속세는 주정부 차원에서 과세되는 세목이다. 유산세의 경우에는 부모(또는 상속을 주는 이)가 연방정부에 납부하게되며, 상속세는 자녀(또는 상속을 받는 이)가 주정부에 납부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연방세이지만 지역에 따라 주정부에서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상속증여관련 세제는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유산세, 증여세, 세대생략세가 주를 이루는데, 이는 자산이전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사후에 부과되는 유산세와 생전에 부과되는 증여세를 상호보완적인 세제로 간주, 세대간 자산이전이 생전증여나 사후증여의 경우에 큰 차별이 없도록 한 것이다. 물론 이때 자녀상속이나 세대를 건너뛰는 세대생략상속의 경우에도 선택의 왜곡이 존재하지 않도록 세대생략세를 도입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유사한 세 부담이 돌아가도록 세제를 설계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1〉 미국의 상속증여관련 과세구조

세		목	
이전세 (transfer tax)		유산세 (Estate Tax)	연방정부세
		증여세 (Gift Tax)	
		세대생략세 (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	
		상속세(Inheritance Tax)	주정부세

## II. 최근의 개편동향<sup>1)</sup>

현재 미국의 상속증여관련 세제개편은 2001년 제정된 ‘경제성장과 조세경감조정법(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

1) 본 절의 내용은 김진, 원종학 저, 상속증여세의 경제적효과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을 참고했음을 밝혀둔다.

는 내국세입법 중 상속증여과세 부분을 수정하고자 한 2000년 '사망세 폐지법안'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사망세 폐지법안'은 당시 클린턴 행정부의 거부권행사로 폐기된 바 있는데, 이를 토대로 하여 작성·제정된 법률이 2001년의 '경제성장과 조세경감조정법'인 것이다. '경제성장과 조세경감조정법'은 2001년 5월 미 국회의 양원합동조세위원회 및 상하양원을 통과하여 발효되었다. 동법은 유산세와 증여세 등의 부담경감을 주요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2년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단계적인 세율인하 후, 계획의 마지막 해인 2010년 유산세와 세대생략세를 폐지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유산세와 세대생략세의 통합세액공제에 의한 면제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세부담을 완화시키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조세경감조정법'은 자산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만, 증여세는 존치시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때 증여세의 세율을 개인소득세의 최고명목세율 수준인 35%로 일치시키도록 되어 있어 증여과세의 세부담 경감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

미국의 상속증여관련 세제개편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경제성장과 조세경감조정법'은 2010년까지만을 규정하고 있는 한시세이다. 따라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2011년 부터는 동법의 시행이전 시기인 2001년으로 복귀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최근 2010년 이후를 규정하는 법률이 마련되었지만, 이 과정은 상대적으로 논란이 심각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비록 '경제성장과 조세경감조정법'이 발효되고 있다 하더라도, 상속증여세와 관련된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상당한 진통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자산이전에 대한 과세를 논함에 있어서 이의 폐지론과 반대론은 각각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견해를 대표하고 있으며, 이 두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한 바 있다. 공화당 측에서는 현재의 유산세가 이중과세이며, 투자 및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등을 명분으로 하여 유산세 및 세대생략세의 폐지를 주장하였다.<sup>2)</sup> 반면 민주당에서는 유산세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 그리고 이를 폐지하는 경우 세수감소와 빈부격차의 확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내세워 폐지를 반대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 과정에서 공화당은 유산세의 존속을 염두에 두고 2006년 유산세 감세안(tax extender package)을 발의, 동년 6월에 하원을 통과시켰으나 8월에 상원통과연기(adjourn)가 결정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유산세 감세안은 2011년 유산세가 부활하게되는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면세점의 대폭적인 인상, 적용세율의 인하, 일정소득에 대해서는 30%만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때 법정한계세율은 1천만달러까지 비

2) 이때 이중과세의 의미는 상속 및 증여관련 세제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경우, 형성단계에서 이미 세금(소득세 등)을 납부한 것이라는 논리에 근거한다.

과세되고, 1천만달러에서 2천5백만 달러까지는 자본이득세율에 따라, 2천5백만 달러 이상은 최고 30%~40%의 세율로 적용하도록 한 바 있다. 이후 미국의 상속과세제도는 2007년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재차 논의가 된 바 있지만, 합의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바 있다.

2008년 미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 상속증여세와 관련된 논의도 진전을 보인 바 있다. 대선이후 미국의 조세정책기조에 대한 예상은 대체로 오바마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오바마 행정부 조세정책의 큰 방향은 ‘중산서민층 및 중소기업의 세 부담 완화’로 요약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방안은 근로자 계층 대부분에 대한 조세경감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 부담 완화는 자본이득세와 법인세 등의 세율인하를 통해 추진될 것으로 계획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조세정책은 외형적으로 모든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감세안으로 보이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의 후보시절의 정책자료에서는, 연소득 기준 25만불 이상의 고소득 부유층에 대한 세금경감과 관련된 기존 정책들의 무효화를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의 조세정책은 저소득, 중산계층, 중소기업에 대한 세 부담완화와 고소득 부유층 및 대기업의 세 부담 증가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미국의 상속증여세 관련 세제개편 방향도 ‘경제성장과 조세경감조정법’의 일몰이 도래하는 2011년 이후 2001년 이전으로 복귀를 예상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는 상속증여관련 세제를 일부 부유층만이 납부하는 세목으로 이해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과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원을 통과한 법률안에 따르면 2011년 이후에는 유산세가 부활하기는 하지만 세 부담 경감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의 개편추이를 요약하면, 유산세는 ‘경제성장과 조세경감조정법’에 따라 2010년 일단 폐지되었다가, 2011년에 다시 부활하는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세 부담 경감기조는 ‘면세점의 대폭적인 상향조정’과 ‘최고한계세율의 인하적용’의 형태로 지속될 계획이다.

최근에 이루어진 이와 같은 결정은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기조를 고려할 때, 또한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제위기를 고려할 때 다소 의외의 결과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 재정정책의 중요방향은 재정적자의 완화라 할 수 있으며, 이의 추진방안으로 제시된 정책들이 고소득, 부유층, 대기업에 대한 세 부담 인상이었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 미국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지출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급증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세제의 완화를 골자로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유산세 완화정책의 타당성에 대해 미 상원이 동의한 결과로 평가된다.

〈표 2〉 미국의 상속·증여세 연혁

연도	법률	주요내용
1916	The Revenue Act of 1916	- 연방상속세(Federal Estate Tax) 도입
1918		- 자산기부에 대한 공제(Charitable deduction)가 추가됨
1924		- 2년간 증여세(Gift Tax)의 한시적 도입
1932		- 증여세의 완전한 도입, 증여에 대한 면세 한도(\$50,000) 신설
1935		- 유산의 가치평가 방법으로 대체평가방식 (Alternative Valuation) 도입
1948		- 배우자공제 (Marital deduction) 허용
1976	The Tax Reform Act of 1976	- 상속세와 증여세의 통합 - 세율 및 면세범위를 동일하게 적용 - 세대생략이전세 (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시행
1981	The Economic Recovery Tax Act of 1981	- 배우자공제의 한도 폐지(Unlimited Marital deduction) - 표준상속공제(Unified credit)를 6년간 점진적으로 확대 (\$62,800→\$192,800) - 최고세율을 3년간 점진적으로 \$5Milion, 70%에서, \$3Milion 50%로 인하
1984		- 최고세율을 55%로 인상
1997	The Taxpayer Relief Act of 1997	- 표준상속공제(Unified credit, 혹은 applicable exclusion amount 라고도 표현)를 1997년부터 2006년 까지 \$192,800에서 %555,800으로 점진적으로 인상 - 대다수의 금액과 한도(thresholds and limits)에 물가연동(indexing)을 적용 - 가족경영기업(family-owned business)에 대한 면세(exclusion) 제공
2001	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Act of 1997	- 최고세율을 55%에서 50%로 인하 -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최고세율을 매년 1%p씩 인하 - 2010년에 상속세와 세대상속 이전세의 폐지(repeal)를 규정
2009		- 2011년에 상속세와 세대상속 이전세 부활 - 비과세한도를 3.5milion에서 5milion으로 확대(부부합산 10milion까지 비과세) - 최고한계세율을 35%로 인하

자료 :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폐지동향, 김진, 한국조세연구원 2008에서 인용. 2009년은 추가된 것임.

〈표 3〉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조세정책방향 (대선후보당시 공약)

구 분	주 요 내 용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 완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0(개인)~\$1,000(부부)의 세금감면</li> <li>- 학자금 세액공제</li> <li>- 주택자금대출(mortgage)이자의 10% 세액공제</li> <li>- 중·저소득 노령층에 대한 세금감면</li> <li>- 근로장려세제(EITC)의 확대적용</li> </ul>
기업경쟁력 강화 및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세부담 완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기업(small business) 투자에 대한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의 면제</li> <li>- 고용창출기업의 법인세율 인하</li> <li>- 소규모기업의 건강보험 세액공제 (50%)</li> <li>- R&amp;D투자에 대한 영구적 세액공제</li> </ul>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강화과세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 세원확대 및 조세특례조항들의 취소</li> <li>- 조세피난처에 대한 단호한 단속</li> <li>- 고소득부유층에 대한 세부담완화 정책의 취소(repeal)</li> </ul>

자료: 오바마 후보 정책자료집

### Ⅲ. 세목별 과세체계

#### 1. 유산세(Estate 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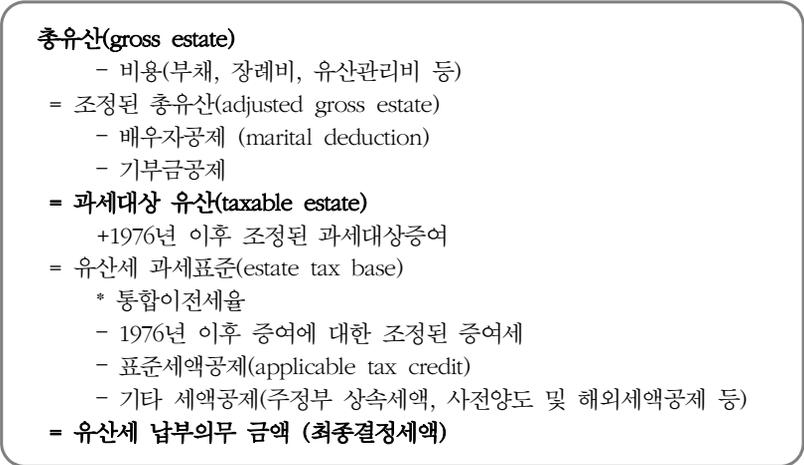
유산세는 고인으로부터 자산이 이전되는 특권에 대하여 연방정부가 과세하는 세금으로, 이전된 자산자체에 대한 세금이라기보다는 사망으로 인한 부의 이전에 대한 세금이다. 유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유산을 상속하는자, 즉 피상속인이므로 유산집행인 또는 유산관리인이 이에 해당된다. 유산집행인은 유언에 따라 지명된 자로서 상속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자산이 배분될 때까지 상속자산을 관리, 상속세 납부, 상속자산의 배분하는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유산집행인이 없으므로, 유산관리인이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만약 유산집행인이나 유산관리인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유산세 납부의무자가 된다.

유산세는 자발적인 신고납부가 원칙이다. 따라서 유산집행인은 총유산, 과세대상증여 및 공제 등의 사망 당시 가치가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유산세 신고를 해야만 한다. 유산세의 공제한도는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개인 200만 달러, 부부합산 400

만 달러이며, 2009년에는 개인기준 350만 달러까지 증가되도록 되어있다. 유산세는 사망 후 9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세당국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12개월 간 납세를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유산가치에 대한 평가는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나 대체평가방식(alternate valuation method)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체평가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모든 자산은 사후 6개월이 되는 날이나 자산을 처분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사후 6개월 이전에 자산처분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평가시에는 모든 자산이 같은 평가방식이나 같은 날짜에 평가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평가에는 예외조항도 존재한다. 만약 조정된 총유산의 최소 50%가 농장이나 비상장사업의 이용되는 부동산, 또는 개인자산이고 그 가운데 최소 25%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공정한 시장가치 대신 실제 사용가치로 대체하도록 하는 사용가치평가방식(special use valuation)이 적용되기도 한다.

유산세와 증여세는 보완관계에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유산세의 세액계산에는 증여자산도 함께 고려된다. 유산세의 산정시에는 생전 증여를 유산에 대한 계약금으로 간주하여 이전된 유산에 생전증여액을 모두 다시 가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즉 유산액에 생전증여액을 합한 총액을 베이스로 하여 각종 공제를 적용하고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세율을 곱하여 잠정 유산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최종유산세액은 앞서 결정된 잠정유산세액에 생전증여시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차감하고, 다시 표준세액공제분을 차감하여 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1> 유산세 산정과정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제정 데이터베이스.

유산세 세액결정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총유산액(gross estate)에서 부채와 장례 및 유산관리비를 차감하여 조정총유산(adjusted gross estate)을 산출한다. 이때 총유산액은 사망당시 사망자가 소유한 권리한도 내의 국내외 모든 자산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물적, 인적, 유무형자산, 공유 및 공동자산, 연부금, 일부 보험수혜금까지 포함된다. 이때 생전 증여분을 고려하기 위해 사망전 3년이내의 증여 등이 포함되는데, 유산신탁기금에 양도된 자산은 이에서 제외된다. 조정총유산은 총유산액에서 각종 비용 및 공제를 적용하여 산출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장례비, 유산관리비, 부채 및 이자, 미납세금, 우발손실, 사법수수료, 기부금, 그리고 생전 배우자에게 이전된 자산 전액이다. 장례비는 지방정부가 법으로 허용하는 한 필요한도를 초과해도 전액공제가 가능하다. 유산관리비는 유산집행인이 자산의 수집, 부채정리 및 자산분배 등 고인의 유산을 관리하기 위해 실제 지불한 비용은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유산 수혜자의 편리를 위해 지출한 주택매매비용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채 및 이자는 사망당시 사망자의 개인적 채무에 한정되어 공제되는데, 상속자를 관할하는 주의 법률에 의하여 고인의 유산에서 지급이 허용된 채무 및 사망시까지의 이자에 대해 적용된다. 미납세금의 공제는 유산세를 사망자가 납부해야할 세금가운데 유산세를 제외한 연방, 주, 지방정부의 모든 미납세금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유산의 관리기간중에 발생한 우발손실(화재, 절도 등 손해) 역시 보험에 의해 보상받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공제된다. 기부금 공제는 문화재단 등의 자선단체, 교육기관 등의 비영리기관에 증여한 자산이 해당된다. 미국에서 기부금은 사망전에는 소득세 계산시 공제혜택을 받으며, 사후에는 유산세 계산시 공제혜택을 받게된다. 이는 문화재단이나 교육기관 등에 유산을 기증함으로써 상속세를 내지 않고 유산을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배우자 이전자산에 대한 공제는 유산을 상속받는 배우자가 미국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고 허용된다. 배우자에게 이전된 자산이나 이전될 때 총유산에 포함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자산을 유산세 과표로부터 공제할 수 있으며, 일부 종신물권(life estate)이나 연부금 등 시한부 권리 등만 제외하면 제한이 없다. 이때 미국 국적자이면 기본적으로 전액 공제됨이 원칙이지만, 만약 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격국내신탁(qualified domestic trust)을 통한 상속인 경우에만 공제되며, 그 외에는 배우자 공제가 불허된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과세대상유산(taxable estate)이 결정되면 여기에 총유산에 포함되지 않은 1976년 이후의 모든 증여를 누적하여 유산세 과세표준(estate tax base)이 결정된다. 이때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의 금액으로 산정되며, 그 대신 잠정 유산세에서 해당증여에 대해 기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된다. 유산세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통합이전세율을 곱하여 잠정유산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유산 및 증여관련 잠정세율 구조는 2001

년 이전에는 최저 18%에서 최고 50%까지 총 16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왔으나, 2001년 ‘경제성장과 감세조정법안’에 따라 면세점 및 세율이 인하조정된 바 있다. 잠정유산세액에서 표준세액공제(또는 통합이전세액공제; unified transfer tax credit)를 적용하면 최종적인 유산세액이 결정된다. 표준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보편적인 세액공제의 방식으로 적용된다. 표준세액공제액은 연도별로 다양한데, 이는 표4를 통해 정리되어 있다. 그 외의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주정부나 외국정부에 납부한 상속세액, 단기상속세액공제 등이 해당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 유산세는 연방세로, 상속세는 주정부세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로 납세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연방정부의 유산세 과세시에는 주정부에 납세한 상속세액이 세액공제되는 것이다. 이는 외국정부에 납부한 상속세액도 해당한다. 이때 세액공제되는 한도는 외국에 실제 납부한 세금액수나 연방정부의 세액 가운데 적은 금액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단기상속세액공제는 단기에 빈번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동일한 유산에 대해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상속개시일과 재상속 개시일 사이의 기간에 따라 2년 단위로 20%씩 한도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이다. 세액공제율은 0~2년 사이에 재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100%이고, 3~4년의 경우 80%, 5~6년의 경우 60%, 7~8년 40%, 9~10년 20%이다.

〈표 4〉 유산증여관련 잠정세 세율구조(2001년 이전)

(단위 : 달러, %)

과세표준구간	최소세액	세 율
up to 10,000	-	18
10,001~20,000	1,800	20
20,001~40,000	3,800	22
40,001~60,000	8,200	24
60,001~80,000	13,000	26
80,001~100,000	18,200	28
100,001~150,000	23,800	30
150,001~250,000	38,800	32
250,001~500,000	70,800	34
500,001~750,000	155,800	37
750,001~1,000,000	248,300	39

과세표준구간	최소세액	세율
1,000,001~1,250,000	345,800	41
1,250,001~1,500,000	448,300	43
1,500,001~2,000,000	555,800	45
2,000,001~2,500,000	780,800	49
over 2,500,000	1,025,800	50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재정 데이터베이스.

유산세의 세부담은 2001년 발표된 경제성장과 감세조정법안에 의해 상당히 완화된 상태라 할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최고세율은 2003년부터 매년 1%p씩 낮추어 45%까지 낮추도록 하였고, 면세점 역시 점진적으로 높이기끔 계획되어 있다. 계획대로라면 유산세율은 2010년에 영(0)세율이 적용되도록 되어있지만, 이는 한시적인 법률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2011년에는 다시 부활하게 된다. 최근 미 상원을 통과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2011년부터 비과세 한도는 개인당 5백 만달러, 부부합산의 경우 1천만 달러까지 증가하며, 최고한계세율도 35%로 낮아질 것으로 되어 있다.

〈표 5〉 경제성장과 감세조정법안(2001)에 따른 면세점 및 세율조정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비과세한도	최고세율
2001	0.5	55
2002	1.0	50
2003	1.0	49
2004	1.5	48
2005	1.5	47
2006	2.0	46
2007	2.0	45
2008	2.0	45
2009	3.5	45
2010	폐지	폐지
2011	5.0	35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재정 데이터베이스. 2011년도는 추가된 것임.

〈표 6〉 유산증여세의 연도별 표준세액공제 및 실질적인 면세금액

(단위 : 달러)

연도	표준세액공제 금액	면세금액
1982	62,800	225,000
1983	79,300	275,000
1984	96,300	325,000
1985	121,800	400,000
1986	155,800	500,000
1987~1997	192,800	600,000
1998	202,050	625,000
1999	211,300	650,000
2000~2001	220,550	675,000
2002~2003	345,800	1,000,000
2004~2005	555,800	1,500,000
2006~2008	780,800	2,000,000
2009 이후	1,455,800	3,500,000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재정 데이터베이스.

## 2. 증여세(Gift tax)

증여세는 개인간에 양도된 자산이 완전하고 적절한 보상보다 낮은 댓가일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때 자산의 무상양도는 물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실체가치보다 낮은 교환비율로 거래된 저가 거래도 양도에 포함된다. 증여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들은 현금을 포함하여 재산을 주는 행위, 재산의 사용권이나 재산으로부터의 소득을 반대급부로 동일한 가치 이상의 어떤 것으로 받을 기대를 갖지 않고 주는 행위, 어떤 것을 전체가치 미만으로 파는 행위, 무이자나 인하된 이자로 대여해주는 행위 등이다. 반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증여행위는 연간공제 이하인 증여, 어떤 사람을 위해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한 의료비, 어떤 사람을 위해 교육기관에 직접 납부한 교육비, 배우자에 대한 증여, 정치조직에 대한 증여, 그리고 기부증여이다. 증여세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증여하는 사람에게 있으나, 증여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받자가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증여세는 연간 1만1천달러를 초과하여 동일인에게 증여된 경우나, 사용이 제한된 조건부 증여를 하는 경우

부과되는데, 증여세는 신고납부의 방식을 따른다. 신고기한은 4월 15일까지 이다. 이때 연간공제는 인플레이션 조정이 가능한데, 2004년 이후 1만 1천달러 연간공제는 생활비 조정에 따라 증가될 수 있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신고납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배우자에게 증여된 자산이나 동일인에게 1만1천달러 이하에 상당하는 현재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의 의무가 없다. 증여세의 결정과정을 개관하면 먼저 연간 증여총액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한 당해연도 과세대상증여액을 계산한 뒤, 당해연도까지의 이전자산 누계액을 더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여기에 통합이전세율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면 잠정증여세액이 결정되는데, 여기에 이전연도까지 과납한 부분과 통합이전세액을 공제하여 최종세액이 산출된다. 다음의 <그림 2>는 증여세 산정과정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림 2> 증여세 산정과정

**연간증여총액**

- 연간증여공제
- 각종공제 (증여공제액)

**= 당해연도 과세대상 증여**

- + 당해연도까지의 이전자산 누계액

**= 증여세 과세표준**

- \* 통합이전세율

**= 잠정증여세**

- 이전연도 증여에 대한 당해연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
- 통합이전세액공제(미사용액)

**= 당해연도 납부해야할 증여세액**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재정 데이터베이스.

증여세 산정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매 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당해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증여를 합산하여 연간 증여총액을 구한다. 이때 배우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영구적 권리양도는 제외되며, 부부가 제3자에게 증여한 자산은 부부가 반반씩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부부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함께 증여할 수 있으며, 매년 수증자 1인당 2만2천달러까지는 증여세 납부 없이 제한되지 않은 수의 사람에게 증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연간증여 총액에서 매년 증여를 받은 사람 1인당 1만 1천 달러를 제외하고, 자선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 등 각종 공제를 차감하면 당해 연도 과세대상 증여액이 산출된다. 만약 1인당 1만1천 달러까지인 기초공제 이하로 증여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의 이연도 가능하다. 자선기부금도 공제(charitable deduction)가 가능하다. 자선기부에 대한 공제는 연방, 주, 시 등의 정부와 종교, 자선, 교육 단체, 향군단체 등의 비영리 단체에 대한 자선적 증여에 대해 적용된다. 한편 배우자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비시민권자인 경우 1988년 7월 13일 이후 발생한 증여에 대해서만 10만 달러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세 과세표준액은 이상의 과징, 즉 연간증여총액에 각종 공제를 차감한 액수에 개인이 평생동안 증여받은 자산의 누적액을 더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이때 과세대상 증여는 직접, 간접적으로 또는 유산신탁기금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수증자에게 증여된 물적, 인적, 유무형 자산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유산신탁기금을 통한 양도나 부채의 감면, 부채 이자율의 감면, 보험수혜, 현금, 정부채권의 양도, 일부 이혼시의 자산배분 및 연부금도 이에 포함된다. 가족 간 주식회사 등 기업에 대한 권리 이전, 이전에 따른 투표권이나 처분권의 소멸도 증여에 포함되지만, 보상이나 급부 없이 제공된 서비스는 과세대상 증여에 간주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이 결정되고 난 후에,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잠정증여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이때 잠정이라고 한 이유는 최종증여세액의 계산시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계산된 잠정증여세액에 이전 연도까지의 과세대상 증여에 대해 납부한 세액과 표준세액 공제를 빼주면 최종 증여세액이 확정된다. 연간증여공제 및 그 외 각종 공제, 그리고 표준세액 공제로 인해 평생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도 증여할 수 있는 액수는 2009년 기준으로 350만 달러에 이른다. 이는 1982년 22만 5천 달러, 2002년 100만 달러에 비하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증여세 과세방법은 기본적으로 유산세의 과세방법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공제범위가 유산세와는 다르고 약간 더 복잡하다는 점, 증여의 대상이 1932년 이후의 모든 증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또한 증여를 받는 사람 1인당 매년 일정금액(1만1천 달러)까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 그리고 증여세 납부를 위해 정부에 제공된 자산(사망 전 3년간 제공된 증여에 대한 세금 제외)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점이 유산세와는 다른 점이라 하겠다.

### 3. 세대생략세(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

세대생략세는 세대를 넘어 상속되는 유산신탁기금에 대해 권리나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는 세대간 자산양도시 부과되는 유산세 등 상속관련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유산신탁기금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이다. 중간 세대를 생략한 상속에 대해서 최고세율로 과세하고 소득배분에 대해서도 과세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 4. 유산소득세(fiduciary income tax)

자산을 상속받는 자는 자산자체에 대하여 소득세를 내지는 않지만,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자산분배에 이를 때 까지 상속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부동산 소득 등에 대해 유산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소득세 신고의무는 자산관리인에게 있다.

## VI. 정책적 시사점

기본적으로 미국의 상속증여관련세제는 개인과 개인 간의 자산이전에 대한 과세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제세를 ‘이전세’로 총칭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증여관련 세목들은 연방정부 단계에서 유산세, 증여세, 세대생략세가 있고 주정부 단계에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납세액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 공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상속증여관련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생애주기에 따른 증여, 유산, 세대생략증여, 그리고 상속 등 자산이전 전반에 걸친 과세가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된다는 점이다.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통합소득공제액과 매년 주어지는 연간공제액이 증여행위에 대한 과세에 고려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생애에 걸친 통합공제액은 유산에 대한 과세에도 적용된다. 이와 같은 과세체계는 결국 한 개인이 증여와 유산상속에 있어 평생에 걸친 자산이전을 보다 합리적인 차원에서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상속증여관련세제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은 가급적 유산의 경우보다 증여가 유리하도록 과세구조를 설계하여 생전 증여를 활성화시키려한다는 점이다. 이는 증여와 상속(유산)이 갖는 기본적인 속성, 즉 상호 대체적인 관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증여세는 유산세에 비해 동일한 조건에서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는데, 이는 증여세의 경우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대상이 되는 제외기준(tax exclusive basis)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의 과세구조에서는 증여와 상속이 동일한 세율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증여가 상속에 비해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라 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과거 증여세가 신설될 때 증여세율이 상속세율 보다 낮았던 점 등은 생전증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의도를 반영한 것이라 평가된다.

이와 같은 미국의 상속증여세제도가 우리나라 제도에 주는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 이는 2001년 채택된 ‘경제성장과 감세조정법안’을 통해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동법은 세대간 자산이전의 왜곡을 극소화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감세안이다. 이를 위해 유산, 증여에 대한 공제를 확충하고, 적용하는 세율도 단계적으로 인하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후에 부과되는 유산세와 세대생략세는 완전히 폐지하려는 계획도 도입했던 경험이 있다. 이는 과거 상속, 유산 등에 대한 과세가 도덕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고 경제적 효율성에도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세제개편논의는 80년대 중반의 근본적 세제개편(fundamental tax reform)을 기점으로 대폭적인 인식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과거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세대상별로 세율을 차별화하고,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과세단계의 세분화 및 급격한 누진세율을 적용했던 세제운영이 그 효과성면에서는 별다른 실리가 없었다는 인식이 근본적 세제개편 논의를 촉발시켰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결국 2001년의 ‘경제성장과 감세조정법안’은 근본적세제개편 논의와 기본적인 인식의 토대를 공유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평가는 동법에 명시되어있는 증여세 존치방안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성장과 감세조정법안’에서는 증여세를 존치시키면서, 증여세율을 소득세율과 일치시키기로 하였는데, 이는 증여세가 발생시키는 비효율을 저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이해된다. 세대간 자산이전에 대한 전세계적인 개편방향이 ‘완화 및 폐지’로 모아지고 있음을 고려해보면, 결국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속증여과세의 개편역시 세계적인 추세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관련 세제개편은 세계적인 추세와는 다소 동떨어진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제는 과세의 형평성을 강조하던 기조에 따라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는 등 근래들어 강화일변도로 변화되어 왔다. 또한 이 가운데 납세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는 문제요소도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세계적인 세제개편의 흐름과 부합하지도 않는 명분을 위해 실리가 희생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한 것이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인식, 부분적으로 완화하려는 움직임은 감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치적인 견해차이가 첨예하여 실질적인 개선여부는 아직 단정짓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의 상속증여관련 세제개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법안, 즉 ‘경제성장과 감세조정법안’ 역시 한시세이고 2011년 이후 유산세가 부활한다는 점, 그리고 다른 세목들과 달리 상속 및 증여관련세제는 해당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속증여관련세제의 완화가 우리나라의 세제가 지향해야하는 최

선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세제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그리 호의적이지 않으며, 세제차원에서 이에 부응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중 하나이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기조가 훨씬 빨리 도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에 따른 세대간 자산이동이 선진국의 선례에 비해 더욱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자면 상속, 증여에 대한 과중한 세부담은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세대간 자산이동, 즉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는 자산의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발생시키는데,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은 동결효과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고령화는 그 현상 자체로 자산이전 시기가 그 만큼 더 늦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며, 고령인구의 증가는 이와 같은 문제가 더 일반화되는 동시에 강력해질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상속증여에 대한 중과세는 우리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합리적이지 않은 정책방향인 것이다. 정책을 담아내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고려나 입장차이가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거스르기 어려운 시대적 흐름에 보조를 맞추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상속증여과세 개편과정에서의 미 의회의 결정은 참고할 만 하다고 본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동세제 개편과 관련된 미 공화당의 입장은 완화로, 민주당의 견해는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08년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2011년 이후의 상속증여과세는 2001년 이전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상속및증여관련 세제에 대한 민주당의 정책적 견해와 오바마 행정부가 밝힌 조세운영정책의 기초, 그리고 재정적자의 심화가 불가피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자명한 예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예상과 달리, 2011년 이후의 세제는 기존의 완화기조를 이어가는 식으로 결정되었다. 재정적자 완화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천명한 상황에서, 더구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 폭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상속 및증여관련 세제의 완화기조가 이어진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세제개편이 단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결정되었다면, 상대 정권에서 추진하였던 세부담의 완화기조가 정권교체 후에도 지속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결국 외적인 이유에 대한 해석은 상이할 수 있겠지만, 미국의 최근 상속증여관련 세제완화 방침은 궁극적으로는 경제활력의 저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 볼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상속증여과세의 개편이 지향해야 할 바도 이와 다름 아니라 평가된다.

## 참고문헌

- 곽태원 외, 2006, 저성장시대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김진, 2008,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폐지동향, 한국조세연구원.  
\_\_\_\_\_, 원종학, 2006, 상속증여세의 경제적 효과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최명근, 2006, 상속과세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 한국경제연구원.  
최광외, 2007, 세금경제학, 자유기업원.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재정database.

<http://210.218.195.12/library/>

## A study on Recent Transfer Tax Reform of U.S.

Kim, Sang-kyum\*

### ABSTRACT

This study briefly reviews the current transfer tax system of U.S. and its reform plan for the 2011. The transfer tax in U.S. is a tax on the passing of title to property from one person to another. The inheritance tax, gift tax, 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 and estate tax are included the category of transfer tax. In U.S.,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re treated as substitutes, so that the tax payer's overall tax burdens are maintained similarly for either cases. Current transfer tax reform of U.S. is performed under the schedule of EGTRR (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 and the key idea of it is 'pursuing economic growth by reducing tax burdens'.

**Key Words** : inheritance tax, gift tax, estate tax, tax reform.

---

\* Department of Economics, Dankook University